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6회 제2차 정례회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2.

운 영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12. 18

운영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황국주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5. 12. 9.(화)
- 회부일자: 2025. 12. 9.(화)
- 검토기간: 2025. 12. 10.(수) - 2025. 12. 15.(월)

## 2. 개정이유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국 및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부서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‘기획재경위원회’를 ‘기획행정위원회’로 명칭 변경(안 제2조제2호)
- ‘도시환경위원회’를 ‘경제도시위원회’로 명칭 변경(안 제2조제4호)
-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정비(안 제3조제2항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의안과 청원을 심사·처리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 제1호 및 제67조 그리고 조례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
- “경제환경국”을 신설하고, “기획경제국”을 “기획전략국”으로, “복지증진

국”을 “복지국”으로, “문화환경국”을 “문화교통국”으로 변경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2025년 12월 12일,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)의 내용을 반영하여,

-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“기획재경”에서 “기획행정”으로, “도시환경”을 “경제도시”로 각각 변경하고, 소관부서를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, 개정 이유 및 취지 또한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<이상 검토보고를 마칩>**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